국세청
www.nts.go.kr

#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

〈 의료기관 〉

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**증명자료를 수집**하여 인터넷 **(국세청 홈택스, www.hometax.go.kr)**을 통하여 **근로자에게 제공**하는 **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의료비 자료를 **2019년 1월 7일까지 홈택스에 제출**하시면, 귀 기관과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**개별적으로 발급하거나 수집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**할 수 있습니다.

의료비 자료제출에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2018. 12.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증빙자료 제출 요령은 뒷면 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고,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
【☎ 국번없이 126 1번 〉 5번 선택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요령

## 1 제출대상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-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(한약 포함) 취급 기관

## 2 제출자료 :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

- '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+비보험)'를 제출
  -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'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'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
  - 미용 ·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 3 자료 제출 방법

- 홈택스 〉 신청/제출 〉 연말정산간소화 〉 소득 · 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
  ※ 의료기관의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
-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〉 자료실 (자료번호 468) [연말정산간소화] 2018년 귀속 소득 · 세액 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조
- 홈택스 〉 신청/제출 〉 연말정산간소화 〉 **자료제출 현황조회**에서 **제출한 자료의 내역** (제출 완료건수, 제출 완료 금액, 오류 건수)을 **확인**할 수 있습니다.

## 4 제출대상 기간 : 2018년 1월 1일~2018년 12월 31일

## 5 제출기한 : 2019.1.1.~1.7.까지 제출(부득이한 경우 1.13. 20시까지 제출)

-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**자료를 다시 제출**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여 다시 제출한 자료만 수록되므로 **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
  예)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

  - 1.1.~1.13. **제출분**은 1.15.**부터 근로자가 조회**할 수 있습니다.(제출시간 8시~22시, 13일은 8시~20시)
- 1.15. **이후** 근로자나 세무서담당자의 요청 등으로 자료를 **수정, 추가 제출할 경우,** 1.15.~1.18.**까지 제출**하여야 하며(제출시간 18시~22시, 18일은 18시~20시) 근로자는 수정, 추가 제출분을 포함한 최종 자료를 1.20.**부터 조회**할 수 있습니다.

## 6 유의사항

- 엑셀로는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5만건 이상 대량 자료는 18시 이후 제출을 권장합니다.

국 세 청
National Tax Service